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8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 송갑석 · 인재근 · 서삼석

김경만 · 정춘숙 · 이장섭

전용기 · 안민석 · 이개호
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500만원"을 "2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벌칙) ① (생 략)	제5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<u>500만원</u> 이하의 벌금	2 <u>천만원</u>
에 처한다.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